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확대함(안 제34조의2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